예산낭비

신고 조치결과 및 감사사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사실

목 차

Ⅰ. 예산낭비 신고 조치결과 ····· 1

1. 클린사업 적재대 과다지원 ····· 1
2.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예산낭비 ····· 2

Ⅱ. 예산낭비 감사사례 ····· 4

1. 외부 강의·회의 참석 시 출장비 수령 부적정 ····· 4
2. 교육훈련 출장 중 일비 지급 부적정 ····· 5
3. 건강검진 복무처리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5
4. 연장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 6
5. 보수지급 부적정 ····· 6
6. 영세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위탁) 사업수수료 지급 부적정 ····· 7
7. 안전보건협력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 7
8. 클린보조급 지급 부적정 ····· 8

Ⅰ 예산낭비 신고 조치결과

〔사례1〕 클린사업 적재대 과다지원

▢ 신고내용

클린사업으로 적재대를 지원하며 사업장의 필요수량 보다 많이 지원하여 오히려 작업장 내 이동통로 폭이 좁아져 안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옥외까지 적재대를 설치하는 등 적재대를 과다하게 지원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조사결과

○ ○○지역본부 ○○○○팀 클린업무 담당자는 ㈜◇◇상사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른 적재대 20개를 지원하면서,

- 5개의 적재대가 옥외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사업장 옥외에도 물품들이 쌓여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로 확보차원에서 모두 지원하였음.

☞ **현행 규정 상 적재대의 설치 범위를 옥내에 한정하지 않았고, 옥외의 통로 확보를 위해 지원한 것이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지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한편, 클린업무 담당자는 설치된 적재대가 기초앙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었음.

▢ 조치결과

○ 적재대 지원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 본부 관련부서에 재정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토록 요구

○ ○○지역본부 사업담당자 **신분상 처분**

[사례2]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예산낭비

▢ 신고내용

2013년에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교육을 이수했지만, 아직까지 공단의 강의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공단에서는 강사를 양성 이후 단 한차례 간담회만 했을 뿐 강사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

동 사업은 예산(숙식비, 강의장 임대료, 강사료 등)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임.

감사를 통해 담당자 문책과 예산 삭감 및 회수를 요구하며, 기존 선발된 강사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를 통보해주기 바람.

▢ 조사결과

○ 서비스업 직능단체 법정직무교육 및 MOU 체결기관 활용 등에 따라 교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 '11년부터 '13년까지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를 156명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장 임대료, 교재 제작 등으로 총 ○○,○○○천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 그러나,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의 활용수준은 '14년 7월, 16명으로 전체 양성강사 156명 대비 **10% 수준**이었고,

【 '11년～'14년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활용실적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 7월
강사 양성(누계)	54명(54명)	52명(106명)	50명(156명)	0명(156명)
강사 활용(활용률)	30명(55.6%)	34명(32.1%)	29명(18.6%)	16명(10.3%)
미활용 강사	24명	72명	127명	140명

○ 일부 일선기관에서는 강사 활용 시 순번제 운영 등 합리적인 운영 노력이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었음.

▢ **조치결과**

- ❍ 공단 본부 사업담당 팀장 및 담당자, 일선기관 담당자 등 총 4명의 관련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
- ❍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기존 양성된 강사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 및 사업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본부 담당부서에 **개선 통보**
- ❍ 안전보건강사 서포터즈 사업 예산은 '13년 교육수요 및 실적감소로 본부 담당부서에서 '14년부터 강사양성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별도 예산조치는 실시하지 않음.

Ⅱ 예산낭비 감사사례

〔사례1〕 외부 강의 · 회의 참석 시 출장비 수령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56조(강사료 지급의 특례)에 따르면 “단체지원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에 대한 강사료 및 여비는 공단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며, 교육신청기관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외부기관 강의 등을 실시하면서 총 ○○회에 걸쳐 출장비 ○,○○○천원을 공단에서 지급받음【○○원】

○ 단체지원교육을 실시하면서 총 ○회에 걸쳐 출장비 ○○○천원을 공단에서 지급받음【○○원】

☞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받은 출장비를 회수(시정)

[사례2] 교육훈련 출장 중 일비 지급 부적정

『직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인자2013-13)』 “별표1” 교육훈련여비지급 기준에 따르면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 입교, 수료일 이외 기타 일에는 일비를 정액의 1/2만 청구하여야 함.

○ 교육훈련출장을 근무지외출장으로 신청하여, 등록, 입교, 수료일 이외의 기타 일에도 일비를 전액 지급받아 총 ○○○천원의 일비가 과다 지급됨【○○지사】

☞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받은 출장비를 회수(시정)

[사례3] 건강검진 복무처리 및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일반·정밀건강검진 및 일반·정밀건강검진 결과 재검시 소요되는 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급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건강검진 및 2차 건강검진 시 복무처리를 공가 대신 출장으로 신청하여, 여비 ○○천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음【○○지역본부】

☞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받은 출장비를 회수(시정)

(사례4) 연장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Ⅱ.수당 1.연장근무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직원이 직급별 연장근무시간 허용기준 이내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전에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고 1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고, 출장기간 중의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음.

○ 사무실 출입문 경비시스템 무장 및 해제시간과 실제 연장근무 수행기록을 비교한 결과, 총 ○명이 실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연장근무수당 ○○○천원을 지급받음【○○지역본부】

○ 출장기록과 연장근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규근무 개시전 또는 개시후 ○○건의 연장근무가 출장과 중복되어 수당 ○○○천원과 특근매식비 ○○○천원이 과지급됨【○○○○지사】

☞ **해당 직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받은 연장근무수당 등을 회수(시정)**

(사례5) 보수지급 부적정

임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성과연봉제 대상자의 직무등급 적용 오류에 따른 ○○○천원 **과지급**

○ 휴직자에 대한 보수 감액 미실시로 ○○○천원을 **과지급**

○ 연장근무시간 전산오류에 따라 연장근무수당 ○○○천원 **과지급**

○ 성과연봉 비대상에 대한 성과연봉 ○,○○○천원 **과지급**

☞ **해당직원에 대하여 부당 지급받은 수당 회수(시정)**

[사례6] 영세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위탁) 사업수수료 지급 부적정

사업계획 추진지침에 따라 영세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위탁) 사업 수수료를 지급 시 지원한계*를 초과하여 방문지원한 경우는 수수료를 미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밀착지원 1일 3개소, 감성지원 1일 9개소)

○ 영세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지원(위탁) 사업수수료를 지급 시, 지급제한의 사유인 지원한계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위탁업체인 (사)○○○○○○○협회 ○○○○지회에게 감성지원 수수료 ○○건, ○○○천원을 초과 지급함【○○지사】

☞ **담당 직원 신분상 조치 및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수(시정)**

[사례7] 안전보건협력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2012년도 사업계획추진지침(565p~567p)」 및 「2012년도 안전보건협력사업 계획(안전문화-116, 2012.1.19)」에 따라 안전보건협력사업 수행단체는 지원 받은 사업비를 "안전보건협력사업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운영지침"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 '○○○○○○○학회'는 ○○,○○○천원의 지원금을 받아 '안전보건 교과서 및 지도서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 ○○○○대 ○○○연구원에서 간담회 개최 후 뷔페집에서 ○,○○○천원을 70명의 식대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 ○○○○○○○학회에서 제출한 증빙 영수증을 확인 결과 실제로는 25명이 참석하여 1인당 45,10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단위 단가 30,000원을 초과하여 총 ○○○천원 초과 집행함. 【○○○○실】

☞ **관련 학회로부터 부정 집행한 업무추진비 ○○○천원 회수(시정) 및 사업수행단체의 모니터링 강화**

[사례8] 클린보조급 지급 부적정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2013. 2. 15 개정) 제15조(보조지원 비율)에 의하면,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의 지원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50%까지로 하며, 근로자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지원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70%까지 지원함.

○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조지원 비율을 판단금액의 70%로 적용하지 않아 보조금 총 ○○○천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음【○○○○지사】

○ 클린사업 지원품목 중 대체 지원설비는 투자완료 확인 시 기존 설비의 폐기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나, 총 7개 사업장의 기존설비 12대가 폐기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천**원** 교부【○○○○지사】

○ 클린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직류아크용용접기 → 직류아크용접기” 교체에 보조금 ○,○○○천원을 과지급【○○지사】

☞ **담당 직원 신분상 조치 및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보조금 회수(시정)**